

글로벌인재학부 학사 내규

개정일 : 2017. 04. 17.

제정일 : 2015. 01. 22.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학칙」 등 우리대학교 학사 관련 제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글로벌인재학부 학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제2조 (이수학점)

- ① 연세대학교 학칙 제51조 제2호의 졸업 이수 학점은 126학점으로 한다.
- ② 졸업 이수 학점 중 전공 이수학점은 ‘한국문화·통상’이 54학점, ‘국제통상’, ‘한국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은 48학점이어야 한다. <개정 2016. 03. 31, 2017. 04. 17>
- ③ ‘한국문화·통상’ 전공 이수학점은 기본과정 36학점 및 심화과정 18학점으로, ‘국제통상’ 또는 ‘한국문화’ 전공 이수학점은 기본과정 30학점 및 심화과정 18학점으로 구성된다.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 이수학점은 국어기본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별표 I 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6. 03. 31, 2017. 04. 17>
- ④ 글로벌인재학부 내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경우, ‘국제통상’ 또는 ‘한국문화’의 전공 이수학점은 36학점이어야 한다. 각 전공의 전공 이수학점은 기본과정 24학점 및 심화과정 12학점으로 구성된다. 단, ‘한국언어문화교육’전공의 전공 이수학점은 국어기본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별표 I 과 같이 정한다.<신설 2016. 03. 31, 개정 2017. 04. 17>

제3조 (전공과목-필수교양과목 대체인정) <개정 2017. 04. 17>

- ① 전공과목 중 4과목(12학점) 이내에서 필수교양 대체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7. 04. 17>
- ② 전항의 대체인정과목 지정에 관한 사항은 글로벌인재학부장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7. 04. 17>
- ③ 전공-필수교양 대체인정과목 수강 시 두 영역 중 하나의 이수조건을 충족하며 졸업이수학점에는 한 번만 인정된다. <개정 2017. 04. 17>

제3조의 2 (전공승인) [본조 신설 2016. 03. 31]

- ① 제1전공신청은 2학기 이수 후부터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신청대상 학기 기말시험 기간 1주일 전부터 1주일 후까지로 한다.
- ② 글로벌인재학부 내 복수전공 신청자는 제1전공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입학 이후 3학기 이수 후부터 졸업직전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③ 글로벌인재학부 내 부전공 취득 희망자는 해당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부전공을 위한 필수이수과목은 한국어언어문화교육전공의 경우 별표 I, 한국문화 및 국제통상의 경우 별표 II 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17. 04. 17.>
- ④ 글로벌인재학부 제1전공 변경 희망자는 제1전공 승인을 받고 3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서 1회에 한하여 3학 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04. 17.>

제4조 (한국어 교육과정 학점인정)

글로벌인재학부 내에 개설된 한국어 교육과정 취득학점과 「학사에 대한 내규」 제16조에 따라 한국어학당 한국어과정 이수에 대한 인정학점(최대 9학점)은 총 18학점 이내에서 취득 학점으로 인정된다. <개정 2015. 08. 18>

제 3 장 글로벌인재학부 자기설계전공

제5조 (글로벌인재학부 자기설계전공 이수가능 학과·전공의 범위)

- ① 글로벌인재학부 자기설계전공(이하 ‘자기설계전공’이라 한다)은 음악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약학과 소속 학과·전공을 제외한 전 학과·전공에서 이수할 수 있다.
- ② 학과 또는 전공에 따라서는 자기설계전공 학생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신청자격)

- ① 학생은 2학년 1학기부터 원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서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 ② 체육계열 전공에서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7조 (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 ① 자기설계전공 전공학과 또는 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 중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 각 학과 또는 전공은 필수이수과목을 12학점 이내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선수과목을 과

할 수도 있으며, 체육계열 전공의 경우 실기과목 이수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③ 동일한 과목을 전공, 자기설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자기설계전공을 위한 수강지도는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이 한다.

제8조 (자격취득)

- ① 자기설계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밟은 이로서 자기설계전공의 자격을 취득코자 하는 이는 졸업 신청 시 자기설계전공을 신청한다.
- ② 자기설계전공의 이수사정은 자기설계전공학과 또는 전공에서 하되 주전공 이수사정과 동일한 절차를 취한다.

제 4 장 기타

제9조(내규의 개폐) 이 내규는 규정류관리 규정 제10조 2항에 따라 개폐하되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폐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3조의2)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국문화통상 전공은 2015, 2016학년도 입학생만 적용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3조의2 제3항 및 제4항)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 I> 한국어언어문화교육전공 이수 요건

번호	영역	개설 과목	필수이수학점		
			제1전공 (2급 정교사)	복수전공 (2급 정교사)	부전공 (3급 정교사)
1	한국어학	한국어 어문규범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의 이해	6 (한국어학 중 2과목 이수)	6 (한국어학 중 2과목 이수)	3 (한국어학 중 1과목 이수)
2	일반언어학/ 응용언어학	사회언어학연구 대조언어학	6	6	3 (일반언어학/ 응용언어학 중 1과목 이수)
3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표현교육 한국어이해교육 한국어문법교육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24	24	9 (한국어교육론 중 3과목 이수)
4	한국문화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의 역사적 사건 한국의 문화적 사건 한국의 전통 종교와 사상 한류와 한국문화 한국 대중문화의 이해 한국의 가족과 문화 한국의 고전문학과 전통예술 근대성과 한국문학 디지털 환경과 한국문화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화합 한국현대문화분석	9 (한국문화 중 3과목 이수)	6 (한국문화 중 2과목 이수)	3 (한국문화 중 1과목 이수)
5	교육실습	한국어교육실습	3	3	3
합계			48	45	21

<별표Ⅱ> 국제통상 및 한국문화 부전공을 위한 필수이수과목

전공	필수이수과목	비고
국제통상	국제통상입문, 경영과회계, 통계학연습, 한국과 국제관계 중 2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	국제통상입문의 경우 한국문화통상입문1 또는 한국문화통상입문2로 대체가능
한국문화	한국문화입문, 한국의 역사적 사건, 한국의 문화적 사건, 한류와 한국문화 중 2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	한국문화입문의 경우 한국문화통상입문1 또는 한국문화통상입문2로 대체 가능